

2.3 BK교수에 관한 운영세칙

제정 2006. 8. 3
제 1차 개정 2007. 10. 23
제 2차 개정 2008. 10. 20
제 3차 개정 2014. 01. 07
제 4차 개정 2020. 09. 01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“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규정”에 의거 계약제 교수(‘BK교수’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재원) BK교수의 운영 재원은 BK21 FOUR 사업의 국고지원금 및 기타 각종 재원의 지원금 (기타기금)으로 한다.

제 3조 (BK교수선정위원회)

- (1) BK교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위임으로 BK교수선정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를 둘 수 있다.
- (2) 위원장은 단장이 맡고, 위원은 연구단 3개의 사업팀(질환동물을 이용한 발병기전연구, 동물질병치료 기술개발, 국가재난형 질병연구)에서 추천한 교수, 수의과대학 교무부학장, 실무위원 1인(간사)으로 구성한다.
- (3) 연구단 3개 사업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(4)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① BK교수의 정원에 관한 사항
 - ② BK교수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
 - ③ BK교수 처우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BK 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
- (5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조 (자격) BK교수는 지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 한다. 국고지원금으로 채용하는 BK교수는 지원마감 월 기준 과거 2년간 2편, 혹은 3년간 3편 이상 SCI급 논문 (과학기술분야),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학술논문 및 저서 발표 실적(인문사회분야)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 5조 (선정 및 배정기준) 국고지원금으로 채용하는 BK교수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(1)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(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)

제 6조 (심사사항)

(1) 신규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① 기초 및 전공심사(1단계)

- 가. 서류 및 지원자격 요건
- 나.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
- 다. 총괄연구업적

② 면접심사(2단계)

- 가. 공개발표 및 공개강좌
- 나.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
- 다. 임용적합성

제 7조 (BK교수의 채용절차 및 심사)

- (1) B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신규채용 절차는 공고, 접수, 심사, 선정, 결과 통보 및 임용 추천의 순으로 한다.
- (2) 제6조에서 정한 심사 사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 공개발표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.
- (3) BK교수의 채용절차 및 심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“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”에 따른다.
- (4) 신규임용자는 연구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8조 (신규임용자의 직급)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‘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제8조’에 따라 계약교수, 계약부교수, 계약조교수로 임명하되,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,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명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9조 (임용) 신규교수 임용절차는 “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”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서울대학교 총장과 채용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며,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없다.

제 10조 (계약 기간)

- (1) BK21 FOUR 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되는 BK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2) BK21 FOUR 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채용되는 BK교수의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산 2년으로 한다.
- (3) 계약연장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연장 심사를 거쳐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승진) BK 교수의 승진은 계약기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, 계약 연장시에 승진 할 수 있다.

제 12조 (BK교수의 권리 및 임무)

- (1) BK교수는 연구단장이 정한 연구 분야에 전념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

연구단장이 관련 대학(원)장과 협의하여 교육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- (2) BK교수는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, 대학(원)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- (3) BK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 13조 (재원 보수 등)

- (1) BK교수의 보수(퇴직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개인 부담분 포함)는 국고지원금이나 기타 기금에서 지원한다.
- (2) BK교수의 채용에 따른 제반 경비(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기관 부담금 등)는 연구단에서 지급한다.
- (3) BK교수의 퇴직금은 계약기간 단위로 정산하되, 계약기간 중 연보수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- (4) 단장은 BK교수가 연구목적 이외의 국외여행,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 14조 (복무 및 당연 퇴직 등)

- (1) BK교수의 근무시간,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)는 ‘공무원 복무규정’을 준용한다.
- (2) BK교수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’을 준용한다.
- (3) 비전임 교원의 임용 계약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(4)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.
- (5)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‘공무원 복무규정’ 및 본교 교육공무원 복무 관례에 따른다.

제 15조 (계약해지) BK교수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연구단장이 학장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총장에게 요청하고, 총장은 이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고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본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
- ④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⑤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- ⑥ 연구단운영비의 규모가 BK교수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된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두뇌한국21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경우

제 16조 (징계) BK교수에 대한 징계는 ‘교육공무원 징계령’을 준용하되, 징계관할은 ‘서울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’가 된다.

제 17조 (기타사항) 본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4단계두뇌한국(BK)21사업관리운영지침”, “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”, “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인사관리 세부지침”에 준한다.

◁ 부 칙 ▷
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 8. 3; 2007. 10. 23; 2008년 10월 20일)로부터 시행한다.